

주암댐 주변지역 동행화합행사 “주암댐 물빛 이음제” 수행기관 모집공고

1. 사업목적

-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과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문화·화합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세대간 소통 기회 마련

2. 사업개요

구 분		내 용
사 업 명		• 주암댐 주변지역 동행화합행사 “주암댐 물빛 이음제”
사 업 기 간		• 2026. 9월 ~ 2026. 10월(2개월) ※ 행사 준비기간 포함
예 산 액		• 70,000천원
추진일정	제안서 접수	• 2026.08.13. ~ 2026.08.21.(9일)
	제안서 심사	• 2026.08.25.(화)
	심사결과 발표	• 2026.08.26.(수)
	협상 및 협약체결	• 2026.08.27.(목)
제 출 서 류		• 공모신청서 1부, 사업계획서 1부 • 유사사업 실적 1부, 청렴서약서 1부 •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• 필요시 기타 증빙자료 1부
제 안 서 접 수		• 접수기한 내 방문, 우편, 이메일 제출
이메일 및 우편주소		• 이 메 일 : god2020@kwater.or.kr • 우편주소 : 전남 순천시 상사호길 501 * 연락처 : 061-749-7218 주암댐지사 정두원 대리

※ 제안서 작성 시 붙임의 행사내용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요망

3. 수행기관 선정

구 분	내 용								
참가자격	• 주암댐 주변지역 소재지內(순천,보성,화순,곡성)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법인 -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-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- 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* 주암댐 주변지역 : (순천시) 송주읍·상사면·주암면·송광면·외서면·낙안면 (보성군) 검백면·문덕면·북내면·울어면 (화순군) 사평면·동북면·한천면(영외) (곡성군) 목사동면·석곡면								
제안서 심사	• 참여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최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*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, 심사단 다수결로 결정 • 참여기관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, 심사위원, 심사결과 등 심사 관련 세부 정보는 비공개 원칙								
평가기준	• (정량평가) 20점(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 실적) * 수행실적 1회 이상 있을시 20점, 없을시 10점 • (정성평가) 80점(사업계획서 평가) <table><tr><td>평가항목</td><td>기관의 적정성</td><td>사업운영 역량</td><td>사업세부 운영계획</td></tr><tr><td>점 수</td><td>20점</td><td>20점</td><td>40점</td></tr></table> ※ 제출서류 중 허위제출서류 포함시 심사에서 제외되며, 수행기관 선정 이후라도 허위자료 제출 확인시 수행기관 선정 취소	평가항목	기관의 적정성	사업운영 역량	사업세부 운영계획	점 수	20점	20점	40점
평가항목	기관의 적정성	사업운영 역량	사업세부 운영계획						
점 수	20점	20점	40점						

4. 유의사항

□ 허위자료 제출, 사업 미이행, 법규 위반시 사업중단 및 제재

※ 제재대상 사례

- 제안서, 증빙 및 요구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
- 기관이 제출하여 승인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집행내역의 증빙·소명이 불충분한 경우
- 관련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기관의 사회적 명예실추로 공사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경우

→ 향후 K-water 관련 사업 공모 참여 자격 제한

【사회복지사업법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'사회복지사업'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'사회복지법인'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【민법】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【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법률】

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·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慈善)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(이하 "공익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주암댐 주변지역 동행화합행사
“주암댐 물빛 이음제”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**

기 관 명						
주 소				전 화 번 호		
				팩 스 번 호		
대 표 자 성 명		사 업 자 등 록 번 호		법 인 관 련	법 인 명	
					등 록 일	
신 청 자 성 명		전 화 번 호			법 인 성 격	☐ 공공 ☐ 비영리 ☐ 민간
		전 자 우 편				

2026년 K-water 주암댐 주변지역 동행화합행사 “주암댐 물빛 이음제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수행기관 공모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의 허위나 조작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K-water 주암댐지사 귀하

※ 신청인 제출서류

1. 사업계획서 1부 <서식1>
2.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1부 <서식2>
3. 청렴서약서 1부 <서식3>
4.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.
5. 기타 증빙자료 1부(필요시).

<서식 1>

주암댐 주변지역 동행화합행사 “주암댐 물빛 이음제” 사업계획서

<주요 목차>

1. 사업 개요
2. 수행기관 직원현황 및 조직
3. 주요 사업내용
4. 사업 세부 운영계획
5. 기타 예산편성내용 등

<서식 2>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

※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/사업별 작성

기관명 (법인명)	
사업명	
사업기간	
사업비	총 천원
추진실적	○ 연도별 사업별로 작성
사업성과	○ (사업 시행으로 수혜자들의 얻은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)

<서식 3> 청렴서약서

청 령 서 약 서

○ 공모명 : 주암댐 주변지역 동행화합행사 “주암댐 물빛 이음제”

본인은 위 사업의 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, 평가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직원에게 금품,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,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심사위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26 . . .

서약자

소 속 :

직위(급) :

성 명 : (인)

붙임 3

공모평가 및 업무수행능력 평가표

구 분	평가항목	평가내용						
계량 (20점)	유사사업 수행 실적 (20점)	•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여부						
		구 분		1회 이상		실적 없음		
		점 수		20점		10점		
비계량 (80점)	기관 의 적 정 성 (20점)	• 설립목적 및 활동내용이 추진하려는 사업과 유사한지						
		구 분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		점 수		20	16	12	8	4
	사업 운영 역 량 (20점)	• 추진하려는 사업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						
		구 분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		점 수		20	16	12	8	4
	사업 세부 운영 계획 (40점)	• 사업목표의 명확성,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						
		구 분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		점 수		40	32	24	16	8

* 2개 기관 이상 참여시 최종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인 기관 선정

* 1개 기관 단독참여시에는 최종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시 선정

주암댐 주변지역 동행화합행사 “주암댐 물빛 이음제” 위·수탁협약서

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장(이하 “K-water”라 한다.)은 0000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.)에 주암댐 변지역 동행화합행사를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- ☐ 사업비 : 일금 칠천만원정 (₩ 70,000,000-)
- ☐ 위탁기간 : 2026. 9. 01. ~ 2026. 10. 30.
- ☐ 사업대상지역 : 주암댐 주변지역 일원(순천, 보성, 화순, 곡성 등)
- ☐ 사업대상 :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 등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“K-water”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「주암댐 동행 화합행사」 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의 원활한 운영을 “수탁기관”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탁의 범위) “K-water”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고, “수탁기관”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.

1. 사업계획의 수립
2. 사업 참여자(공연팀 등) 섭외에 관한 사항
3.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(운영인력의 확보 및 운용, 행사 참가자 모집, 홍보, 관계 기관 협조체계 구축·운영, 성과평가 등)
4. 사업 안전·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5. 인건비 등 사업비의 집행
6. 사업실적 관리 및 결산
7. 기타 각 조에서 정하는 사항

제3조(사업계획 수립 등) “수탁기관”은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“K-water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목적 및 필요성
2. 사업 추진의 세부적인 사항(사업내용, 절차 등)
3. 사업비 집행 계획
4. 기대효과
5. 사업자등록증, 통장 사본

제4조(사업비지급) 수탁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“K-water”에게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“K-water”는 수탁기관이 지정한 통장에 사업비를 교부한다.

- 제5조(사업의 수행 등)** ① “수탁기관”은 위탁기간 동안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임해야 하며, “K-water”는 “수탁기관”이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수탁기관은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“K-water”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,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
- ③ 수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3조의 사업계획 및 사업비 등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K-water와 미리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안전·보건관리 등) “수탁기관”은 사업 시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“수탁기관”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
- 제7조(사업추진결과 제출)** ① “수탁기관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 추진 결과보고서를 위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“K-water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사업 추진 실적
 2. 사업비 정산 내역
 3. 기타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영수증, 사진대지 등)
- ② “K-water”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탁기관에 이의 보완 및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수탁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.
- ③ 수탁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경우 계좌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체없이 “K-water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- 제8조(“수탁기관”의 의무)** ① “수탁기관”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“수탁기관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K-water”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“K-water”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“수탁기관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“수탁기관”은 필요시 매월 말일 또는 지정된 기간을 기준으로 “K-water”에게 사업 위탁 실적과 정산결과에 대해 중간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“K-water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임업무 처리상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“수탁기관”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의 지원 및 수익금 등이 발생할 경우, 이를 “K-water”에게 알리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⑤ “수탁기관”은 “K-water”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관계서류 열람, 현장확인,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
- 제9조(협약의 해지 · 해제)** ① “K-water”와 “수탁기관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
 2. 제8조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
 3. “수탁기관”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4. “K-water”의 예산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할 경우

5. 기타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“수탁기관”은 그 해지 또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산서를 10일 이내에 "K-water"에게 제출하고,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제3항을 따른다.

제10조(협약의 해석 등) 이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서의 제규정에 대하여 "K-water"와 “수탁기관”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"K-water"의 의견에 따른다.

제11조(권리의무의 양도제한) “수탁기관”은 이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, 하도급을 줄 수 없다.

제12조(물품(시설물)의 소유주체) 이 사업에서 사업비로 구매한 지원물품(시설물) 등은 원칙적으로 “K-water”의 소유로 한다(소모성용품 및 50만 원 미만 물품 제외). “K-water”는 부득이한 경우 지원물품 등을 그 지원물품 등이 소재한 지역주민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.

제13조(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) 이 협약 진행 중 제3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“K-water”와 “수탁기관” 중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부담한다.

제14조(관할법원) 이 협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법원은 K-water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15조(협약의 효력) 이 협약의 효력은 “K-water”와 “수탁기관”의 대표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.

이 협약서의 유효함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 . 08 . 00.

(갑) K-water 주암댐지사장 강 용 호 (인)

(을) OOOO 대 표 O O O (인)

붙임 6

“주암댐 물빛 이음제” 행사내용

□ (행사내용) 주민 참여 공연, 체험 및 댐 주변지역 특산물 판매 등

구 분	내 용
공연 및 화합	• (학생공연) 폐교위기 학교에 지원하는 오케스트라와 실용음악 공연 • (주민공연)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 참여 노래경연 ‘나도 가수다’ • (미니게임) 주암댐 주변지역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한 레크리에이션
체험 및 홍보	• (환경 체험) 폐플라스틱을 활용 체험(댐 수질개선, ESG 가치 확산) • (지역상생) 주암댐 주변지역 특산물 판매(사평기정떡, 보성녹차 등) • (홍 보) 방울이 포토부스, 방울이 밥차, 이동식 음수대 운영
나눔 및 복지	• (차량지원) 원거리 주민 및 어르신 등을 위한 행사버스 등 운행 • (복지나눔) 행운권 추첨, 점심식사·간식·음료 및 기념품 등 지급

□ 행사내용 설명을 위한 참고용 사진



오케스트라 콜라보(학생, 주민)



‘나도 가수다’ 주민참여 노래경연



레크리에이션(주민 운동회)



체험&특산품 부스 운영



따뜻한 밥한끼 ‘방울이 밥차’



친환경 홍보(방울이 포토부스)